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770호)

2025.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황충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연안안전지킴이 위촉 및 활동경비 지원 주체 확대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삼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9. 8.

3. 회 부 일 : 2025. 9.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연안사고 예방 활동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권자를 해양경찰청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있으므로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연안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해양경찰청장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국고지원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권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고, 사업 재정지원 주체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함으로써, 연안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17조제4항).

Ⅲ. 검토의견

1. 연안안전지킴이 위촉 및 활동경비 지원 주체 확대

개정안은 연안사고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권자를 현행 ‘해양경찰청장’에서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고, 활동 경비의 지원 주체 또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연안안전지킴이 위촉) ① <u>해양경찰청장</u> 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연안안전지킴이 위촉) ① <u>해양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u>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지방자치단체의 장</u> 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연안안전지킴이가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u>해양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u> ----- <u>경우</u> ----- ----- -----.

현행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¹⁾에서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부여하고 있고, 제17조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권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비 지원 주체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연안안전지킴이 194명이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위험구역 97개소에서 사고예방활동을 하였음.

그러나 현재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현행 법규정과 달리 해양경찰청만이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바, 장기적으로 현행 법규정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경비를 부담하려면 해양경찰청과 함께 위촉주체가 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은 연안사고 예방 책무가 있는 해양경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 모두에게 연안안전지킴이 제도 운영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도의 실효성과 협업 기반 강화 측면에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1)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안전체계 구축 및 기반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최근 5년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예산	597백만원	617백만원	788백만원	720백만원	731백만원
배치개소	84개소	83개소	104개소	97개소	97개소
인 원	168명	166명	208명	194명	194명

* 자료 : 해양경찰청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²⁾에서는 연안안전지킴이 위촉 및 활동경비 지원 주체가 확대됨에 따라, 운영 기준과 경비 집행 방식의 차이로 현장 혼선과 지역 간 운영 편차 발생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또한, 연안 사고 예방활동은 지역 특성에 대한 이해와 일정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인 만큼,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인력 위촉과 교육·운영을 전담할 경우 행정역량의 차이에 따른 제도 실효성 저하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음.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연안안전지킴이 업무가 연안순찰, 안전계도, 시설물 점검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연안안전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의 연안안전 여건과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을 편성한다면 현장의 혼선과 지역 간 사업편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및 서귀포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회신, 2025. 9. 11. ~ 9. 25.

참고로 「산림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유사 입법례³⁾에서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인력을 위촉하거나 예산 범위 내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425

3) 「산림보호법」 제17조(산림보호원의 고용)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참고 1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안 및 유사입법례 비교

□ 연안안전지킴이, 산림보호원, 아동안전지킴이 등 유사입법례 비교
표는 아래와 같음

구분	「연안사고예방법」		「산림보호법」 (산림보호원)	「아동복지법」 (아동안전지킴이)
	현행	개정안		
근거 규정	법률 제3조, 제17조 시행규칙 제11조		법률 제3조, 제17조 시행규칙 제15조	법률 제4조, 제33조, 제59조 시행령 제32조, 제33조
책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자격 기준	1. 연안해역 인근 거주자 2. 활동에 지장이 없는 건강한 상태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해양사고 예방과 관련 있는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 로서 해당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가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려는 사람		법적 자격제한은 없으나, 기관별 공고문에 기준 명시 1.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2. 공고일 기준 응시가능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되지 아니한 사람 1. 성 범죄 경력자 2.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 영자 및 종사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 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 여하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부적격자
위촉 권자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지방자치단체장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경비 지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해양경찰청장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경찰서장 집행) * '21. 1. 1. 자치경찰사무로 이관 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비용 부담
활동 범위 (임무)	1. 연안순찰대원 임무의 보조·지원 2. 연안체험활동 장소나 출입통제 장소 등에서의 순찰·지도 3. 위험표지판 등 안전관리 시설물에 대한 점검 4.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 한 조치		1. 산림의 훼손·오염 방지 및 계도 2. 산림 식물의 보호 3. 산림병해충 예찰 4. 산불 예방 활동 5. 그 밖에 산림 보호에 필요한 활동	1.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2. 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한 일시적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시 조치 3. 그 밖에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참고 2

「연안안전지킴이」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목적)**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위촉, 연안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보조하게 함으로써 연안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 위함
- **(주요 임무)** ①연안해역 순찰을 통한 사고예방 계도 및 홍보 활동, ② 위험표지판 등 안전관리시설물 점검, ③그 밖에 사고발견 시 초동 조치 등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 등
- **(배치현황)** 전국 연안 위험구역 97개소, 194명 배치(매년 5~10월간)
- **(시행체계)** 해양경찰청 사업 총괄, 경찰서 선발·운영,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

해양경찰청	경찰서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 선정·감독 ■ 지킴이 위촉권자 ■ 표준근로계약의 사업주	■ 지킴이 모집·선발 ■ 배치 운영 및 감독 ■ 활동실적 취합보고	■ 활동비·보험 집행 ■ 직무교육 및 활동지원 ■ 활동 물품·피복 관리

□ 주요 활동 및 성과

- **(주요 활동)** '21 ~ '25. 9월까지 930명의 지킴이가 465개소에서 사고예방 활동 전개, 56명 구호, 58만여명 계도, 안전시설물 20만여건 점검
《 연도별 연안안전지킴이 활동 실적 》

구 분	누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9월
위험구역*(개소)	4,174	910	857	820	811	776
배치개소(개소)	465	84	83	104	97	97
구 호 조 치 (명)	56	12	10	12	12	10
안 전 계 도 (명)	583,569	97,035	123,325	136,967	113,102	113,140
시설물점검(건)	202,132	16,269	35,093	40,648	52,000	58,122

* 연안위험구역 : 매년, 최근 3년간 사망·사고 발생 등 연안해역 위험성 조사 및 평가

- **(주요성과)** 연안안전지킴이 배치장소에서는 평균적으로 연안사고 29%, 사망자는 22% 감소하는 등 연안사고 예방 효과가 확인됨
《 연도별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성과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년평균 ('16~'20)	'21년	감소율	5년평균 ('17~'21)	'22년	감소율	5년평균 ('18~'22)	'23년	감소율	5년평균 ('19~'23)	'24년	감소율
사 고 (건)	92	79	14%	73.4	45	39%	67.8	46	32%	89.8	62	31%
사 망 (명)	19.4	16	18%	11.4	6	47%	10	8	20%	11.4	11	4%

참고 3

지자체 유사 일자리 사업 현황(국비 지원)

구 분		관련 규정	선발·채용	운영 기간	예산 (백만원)	채용 (명)	분담율 (국:지)
해양경찰청 연안안전지킴이		연안사고 예방법	해양경찰청	6개월	731	194	국비 100%
산림청	산림서비스 도우미 (도시숲 정원관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	10개월	1,108	105	5:5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산림보호법 제17조, 제20조, 제41조, 제45조의15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	6개월	77,836	9,604	4:6
	산사태 현장예방단			5개월	5,728	760	4:6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10개월	23,660	1,500	5:5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	10개월	15,193	875	5:5
환경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지방자치단체	10개월	17,726	1,400	5:5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물환경보전법 제31조	지방자치단체	12개월	10,932	513	7:3
여가부	새일여성 인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	9개월	28,619	7,777	8:2
문체부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이야기 할머니)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39조, 문화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	8개월	9,990	3,200	7:3